

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파주시 및 파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송수행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물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본안사건(행정·민사소송)인 경우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하고,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함.(안 제5조제1항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조례개정안건은 파주시 또는 파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관계공무원이 수행함에 있어서 소송을 승소하거나 패소할 수도 있는 소송건을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승소로 전환시키는 등 소송수행에 적극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3월1일 조례 제16호로 개정되어 운영돼 왔으나,
- 그동안 포상금 지급기준이 행정 또는 민사소송 1건당 1인 2만에서 최고 1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적으로 조례가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었음.

- 이에 따라 금번에 당초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 제5조(포상금 지급액) 규정에 정한 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적합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

제4조 (포상금 지급기준) ①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판결은 최종판결에 의하여 결정한다.

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소 취하(쌍방취하 포함)된 경우
2.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판결인 경우

제5조 (포상금 지급액)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본안사건(행정·민사소송) : 1인당 10만원이내. 다만,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2만원이내
2. 신청사건(행정·민사소송) : 1인당 2만원이내

②본안사건에 있어서 행정 및 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8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5조(포상금 지급액)제1항에서 1호의 본안사건의 경우 1인당 “10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올리고, 2호 신청사건의 경우는 1인당 “2만원”에서 “5만원”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

- 조례안건에 첨부된 경기도와 타시군의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을 비교해볼 때 경기도나 부천시의 본안사건이 최고 50만원인 것을 제외하면 파주시의 기준은 현행보다 약 300%수준 상향조정되는 것이며, 동조 제3항에서 본안사건의 경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는 지급액의 최고 8배(240만원)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, 앞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자치단체의 각종 소송사무의 승소율을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됨.

《도 및 타시군 포상금지급기준》

- 경기도(본안/소액·신청사건) 500,000원/각 100,000원
- 부천시(본안/소액·신청사건) 500,000원/ 미지급
- 파주시(본안/소액·신청사건) 300,000원/ 각50,000원
- 평택시(본안/소액·신청사건) 200,000원/ 각40,000원
- 기타시군(본안/소액·신청 “) 100,000원/ 각20,000원

※ 중점 질의사항

- 동 소송수행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최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는지? 또한 조례 제5조2항에 의한 특별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는지?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그동안 몇 건이나 되고 포상액은 얼마나 집행되었으며, 그 내용은 주로 어떤 소송 건이었는지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.